

—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관련조항 조정 보완
-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시 상업광고 시행 근거 마련

3. 주요골자

- 조례명칭 개정 → 「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 」 로 개정
-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 적용
- 쓰레기 규격봉투에 상업광고 시행 신설
- 페타이어처리수수료 신설 (6,000원 ~ 2,000원)
-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에 「 스티로폼 」 추가 지정

4. 검토의견

- 본 조례의 명칭 “구미시일반폐기물배출의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조례”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청스수수료 부과징수 업무가 없어짐에 따라 조례명칭도 포괄적으로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로 개정.
-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그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법개정에 따른 용어의 조정과 통일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구를 수정함.

· 가정쓰레기	→ 생활폐기물
· 사업장쓰레기	→ 사업장폐기물
· 재활용가능쓰레기	→ 재활용가능폐기물
· 일반폐기물	→ 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 쓰레기 규격분류 제작시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근거(제3조 6항)를 마련하여 봉투제작예산을 절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첨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개정내용은 텔레비전과 공기청정기의 적용규격을 현실화하고 폐타이어를 수수료징수품목으로 신설하였으며, 스티로폼이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추가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용어의 자구수정과 처리방법의명시등 일부 내용을 보완 수정하는 내용과 쓰레기 규격분류에 상업광고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조 문

폐 기 물 관 리 법

전문개정 1991. 3. 8
개 정 1995. 8. 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개정 95.8.4 >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신·산알카리·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증화·다쇄·고형화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이립·해역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6. "재성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삭제 < 95.8.4 >

제13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개정 95.8.4>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8.4>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5.8.4>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기물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95.8.4>

제25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처리하는 자,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5.8.4>

②및 ③삭제 <95.8.4>

④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그 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8.4>

⑤2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처리할수 있으며, 이를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95.8.4>

⑥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함에있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보관·운반 또는 처리를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수집·보관·운반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2.12.8, 95. 8.4>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대비표

품 명	현 행		개 정	
	규 격	수 수 료	규 격	수 수 료
일시적다량폐기물	톤 당	15,000 원	현 행 과 같 음	
냉 상 고	500 ℓ 이상 300 ℓ 이상 300 ℓ 미만	8,000 원 6,000 원 4,000 원		
텔 레 비 전	42 인치 이상 12 인치 이상	5,000 원 3,000 원	25인치 이상 25인치 미만	5,000 원 3,000 원
세 탁 기	모든 규격	4,000 원	현 행 과 같 음	
메 어 콘	264 m ² 형이상 66 m ² 형이상 66 m ² 형미만	8,000 원 5,000 원 3,000 원		
가스오븐렌지	높이 1 M 이상 높이 1 M 미만	4,000 원 2,000 원		
탈 수 기	모 든 규 격	2,000 원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2,000 원	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	4,000 원 2,000 원
장 농	120cm 장 1쪽 90cm 장 1쪽	15,000 원 10,000 원	현 행 과 같 음	
쇼 파	대형 6 인용 소형 4 인용	8,000 원 5,000 원		
책 상	알수, 대형 편수, 소형	5,000 원 4,000 원		
식 탁	6 인용 이상 6 인용 미만	5,000 원 4,000 원		
피 아 노	어프라이드 그 렌 드	10,000 원 15,000 원		
보 일 러 통	대 중 소	8,000 원 5,000 원 3,000 원		
캐 비 넷	모든 규격	4,000 원		
짐 대	2 인 용 1 인 용	8,000 원 5,000 원		
페 다 이 어	신 설		대형(Size200이상) 중형(Size16~19) 소형(Size15까지)	6,000원 4,000원 2,000원
가터 가전제품 및 시 우 용 품	대 중 소	5,000 원 4,000 원 2,000 원	현 행 과 같 음	

(주) 상기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